

의안번호	2202899
의 퇴 인	최수진의원
회 답 일	2024.9.15.
추계번호	24D29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9,400만원 등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5억 7,300만원(연평균 13억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안 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894	1,381	1,407	1,433	1,459	6,573	1,315

주: 법 시행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 인건비 등은 7개월분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데 따른 증원인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의안접수 건수(21대국회 기준)와 유사한 타 상임위원회의 인력 등을 비교하여 추정함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함에 따라 회의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 내 유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²⁾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³⁾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안 제37조제1항)

- 본 추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데 따른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
- 현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리·신

1) 국회의원 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2) 국회 예산 중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사업’ 예산으로 약 420억원(2023년 427억원, 2024년 51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데 따른 회의실 및 사무공간 확보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력 재배치 인원 추정)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의 소관 의안건수와 비슷한 상임위원회 인력 등을 비교하여 재배치 인력을 산출함

-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원은 18명, 제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 접수건수는 총 1,041건이며 이 중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접수건수는 677건, 방통위 소관 법률안 접수건수는 364건임⁴⁾
-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소관 법률안 접수건수와 비슷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431건), 외교통일위원회(285건), 국방위원회(591건), 여성가족위원회(442건)가 있고, 이들 위원회의 정원은 각각 11~15명임

[표 2]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접수건 수 및 정원 현황

(단위: 명,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기부 원안위	방통위				
정원	18		13	15	14	11
제21대 국회 의안 접수건수	677	364	431	285	591	442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중 과기부와 방통위 공동안건 32건은 과기부와 방통위에 각각 16개씩 배분함

자료: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2023.9.18) 및 의안정보시스템

□ (소요인력 추정) 다른 상임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의 소요인력은 각각 14명으로 가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는 각각 수석전문위원 1명과 전문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접수건수 1,041건 중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공동안건 3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위원회로 각각 16건씩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함

위원 1명, 입법조사관 7명, 행정실에 행정실장 1명을 포함 5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소요인력(추정)

	수석전문위원(1)	전문위원(1)	행정실
인력	입법조사관 4명	입법조사관 3명	행정실장 1명 행정관 2명 행정지원인력 2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력 대비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필요인력을 고려한 직위별 순증인력은 다음 표와 같음

-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력은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명, 심의관 1명, 행정실장 1명, 조사관 8명, 행정관 2명, 행정지원인력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필요인력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력의 재배치를 고려한 순수 증원인력 10명에 대한 직위별 배분은 수석 및 전문위원 각 1명, 심의관 1명 축소, 행정실장 1명, 입법조사관 5명, 행정관 2명으로 함⁵⁾

5) 순증인력 직급별 구성은 각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 행정실장 4급, 입법조사관은 4급 3명, 5급 3명, 행정관 6급, 행정지원인력은 9급으로 가정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순증인력(추정)

(단위: 명)

		현행	개정안(필요인력)		순증인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직위별 정원	수석전문위원	1	1	1	1
	전문위원	1	1	1	1
	심의관	1	0	0	-1
	행정실장	1	1	1	1
	입법조사관	8	7	7	5
	행정관	2	2	2	2
	행정지원인력	4	2	2	0
합 계		18	14	14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순증인력 10명의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⁶⁾

○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국회 각목명세서를 참고⁷⁾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7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8.2%)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무원 보수 중 기본연봉 및 봉급에 연동하는 수당은 최근 3년(2022~2024)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하고, 봉급에 연동하지 않는 수당(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⁸⁾을 적용하여 산출함
- 개정안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은 7개월분을 반영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전체 인력 28명 중 순증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추계하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인건비 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7) 수석전문위원 및 4~5급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6~9급은 봉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8)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7.)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기관부담률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0명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7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⁹⁾를 곱하여 산출함

[표 5]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589	1,027	1,045	1,063	1,082	4,806
기관부담금	78	80	82	84	86	409
기본경비	48	49	50	51	52	250
자산취득비	50	0	0	0	0	50
합계	765	1,156	1,177	1,198	1,219	5,514

주: 2026년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법 시행기간을 반영하여 7개월분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비) 사업비는 17개 상임위원회 운영경비(2024년) 평균값 2억 1,100만원¹⁰⁾으로 가정하고,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7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¹⁾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6] 사업비: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업비	129	225	230	235	240	1,059

주: 2026년 사업비는 법 시행기간을 반영하여 7개월분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9,400만원 등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5억 7,300만원(연평균 13억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9)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20,000원임

10) 신설되는 위원회의 직원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17개 상임위원회 운영경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11억 9,500만원으로 평균값에서 제외함

11) 2025년 2.2%, 2026년 2.2%, 2027년 2.1%, 2028년 2.1%, 2029년 2.0%, 2030년 2.0%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안 제37조제1항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894	1,381	1,407	1,433	1,459	6,573	1,315

주: 법 시행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 인건비 등은 7개월분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21대국회 의안접수 건수와 타 상임위원회 인력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증원인력 및 사업비,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